

논문편찬 규정

□ 제정 : 1996. 05. 01

□ 개정 : 2007. 10. 0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들의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논문심사기준) ① 논문집의 편찬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심사자는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

1. 심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가급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심사
2. 심사결과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함

제3조(논문편찬위원회) ① 교원의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논문편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에 5년 이상 근속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유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 심사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심사절차) ①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2학기 초에 논문집 발간을 위한 원고 제출 공고를 낸다.

② 제출된 논문은 내부 1인, 외부 2인에게 심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심사된 논문은 논문편찬위원회 결의를 거쳐 출판된다.

제5조(심사점수 및 게재기준) ① 논문심사에 대한 평가점수는 수, 우, 미, 양으로 한다.

② 평가점수에 양이 포함되면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하며, 이때 1회에 한하여 또 다른 3자에게 재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.

제6조(소명절차) ① 위원장은 심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.

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교원은 1주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도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논문편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논문편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심의하되 이 경우는 심의대상 교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소명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심사결과 반영) 교원의 논문심사 결과는 당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시에 이를 반영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